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2019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 이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CP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 사항의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대리점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CP 활동 참여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사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 관련 점검, 교육, 훈련 등 C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보 및 제보자 보호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법무팀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보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제보자 보호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과 실질적인 CP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9일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 상 균

이 상 균

대표이사 사장 노 진 울

노 진 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19. 6.

개정 2024.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HD현대중공업(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경쟁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며,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법무팀에서 주관하며, 법무팀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제2절 자율준수협의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의 종류와 절차는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자율준수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임직원을 포상하거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20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회사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19. 6.)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 칙(2024. 10.)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목 차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관련부서 전사 조직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 공정거래제도의 중요성	1
2.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1
3.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요건	1
4. CP 평가등급 부여 및 관련 인센티브	2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1. 자율준수 편람의 목적	3
2.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	3
3. 편람 개정	3

제2장 하도급법의 개요 관련부서 하도급계약 체결 : 구매, 동반성장 등

I. 하도급법의 체계	
1. 하도급법의 목적	4
2.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	4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7
4. 각 사업자별 규제 내용	17
II. 하도급법의 주요 특징	
1. 하도급법의 적용기간	18
2. 하도급법의 주요 특징	19

제3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관련부서 하도급계약 체결 : 구매, 동반성장 등

I.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21
2. 하도급 계약의 추정	23
3.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의 보존	24
4. 범위반시 제재	24
5. 공정위 심결례	
II.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의무	
1.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26
III. 선급금의 지급의무	27
1. 선급금의 지급	27
2. 선급금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28
3. 선급금 지급 지연일수 계산의 특칙	29
4. 기성금과의 관계	29

5.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9
6. 범위반시 제재	29
7. 공정위 심결례	30
IV.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1. 내국신용장의 개설	32
2. 구매확인서 발급	32
3. 범위반시 제재	32
4. 공정위 심결례	33
V.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1. 목적물의 검사	34
2. 검사결과 통지의무	34
3. 본 조항의 특징	35
4. 범위반시 제재	35
5. 공정위 심결례	36
VI.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1. 하도급대금의 지급	38
2. 현금결제비율의 유지	39
3. 어음만기일의 유지	40
4.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40
5. 범위반시 제재	41
6. 공정위 심결례	41
VII.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	
1. 건설하도급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44
2.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46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간의 관계	46
4.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46
5. 범위반시 제재	47
6. 공정위 심결례	47
VIII.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의무	
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48
IX.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1.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49
2. 원사업자의 면책사유	49
3. 범위반시 제재	49
X.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51
2. 하도급대금의 조정기간	51
3. 하도급대금 감액의 경우	52
4. 범위반시 제재	52
5. 공정위 심결례	53
XI.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원사업자의 협의의무	55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56
3. 하도급조정협의시 입증책임	56

I.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58
2.	부당한 특약의 간주	59
3.	법위반시 제재	72
4.	공정위 심결례	73
II.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75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간주	77
3.	법위반시 제재	82
4.	공정위 심결례	83
III.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1.	물품이나 용역의 매입·사용 강제 금지	88
2.	정당한 사유	88
3.	법위반시 제재	89
IV.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90
2.	부당한 수령거부	91
3.	법위반시 제재	93
4.	공정위 심결례	93
V.	부당반품의 금지	
1.	부당반품의 금지	96
2.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와 차이	96
3.	법위반시 제재	97
4.	공정위 심결례	97
VI.	감액금지	
1.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99
2.	감액금지 위반의 간주	100
3.	지연이자	102
4.	법위반시 제재	102
5.	공정위 심결례	103
VII.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1.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106
2.	법위반시 제재	107
VIII.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108
2.	법위반시 제재	108
3.	공정위 심결례	109
IX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10

2.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113
3. 적용시점	115
4. 범위반시 제재	115
5. 공정위 심결례	116
X.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 부당한 대물변제	119
2. 범위반시 제재	120
3. 공정위 심결례	120
XI.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 부당한 경영간섭	123
2. 범위반시 제재	125
3. 공정위 심결례	125
XII. 보복조치의 금지	
1. 보복조치의 금지	127
2. 범위반시 제재	128
XIII. 탈법행위의 금지	
1. 탈법행위의 금지	129
2. 범위반시 제재	129

제5장 발주자의 의무사항

관련부서

하도급계약 체결 : 구매, 자산, 동반성장 등

I. 발주자의 의무사항 개요	
1.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의무규정	131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취지	131
II.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31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범위	132
3. 직접지급 중단사유 발생시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133
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지급방법 및 절차	133
5. (가)압류 및 전부명령 등과 직접지급간의 관계	134
6. 범위반시 제재	134

부 록

첨부1. 하도급 사건 처리 절차	136
첨부2. 하도급법 관련 중점 Check 사항	137
첨부3. 서식 「기술자료 요구서」	140
첨부4.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142
첨부5. 서식 「표준 연동계약서」	146
첨부6. 서식 「표준 미연동계약서」	151

제1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 공정거래제도의 중요성

-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2.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률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부터 CP를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CP운영 전담부서로서 법무팀을 두고 있음

3.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요건

CP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 CP 운영 적극 지원 ▪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는 조직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및 CP운영 책임 부여
문화의 전파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편람 작성,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체계적 자율준수 교육 실시 →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에 대해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성과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감시체계 구축 →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독 시스템 구축 및 이사회 결과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제재 조치 사규 제정 및 운용, 유사한 행위 재발 예방
평가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 후 개선조치

4. CP 평가등급 부여 및 관련 인센티브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4. 6. 21.)에 따라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CP평가, 과징금 감경 등의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시행되었음)
-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CP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현장평가	1단계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등과의 면접, CP운영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위원이 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항목별 결과 분석
등급부여 여부 대상 확정	평가신청기업 중 등급 보류 및 미부여 대상 확정

- CP 평가등급은 AAA, AA, A, B, C, D등급 총 6단계로 구분되며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 혜택이 부여됨(유효기간 2년)

평가등급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위반 벌점 경감	위위장표창	과징금 감경* (1회)
AAA	2년	2점	○ (2년 연속취득 시)	15%
AA	1년 6개월	1점		10%
A	1년	-	-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전 범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1. 자율준수 편람의 목적

-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국내외 시장에서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자율준수 편람의 활용

-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법무 가이드로서 외부적으로는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법 위반으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고객사 및 협력업체 그리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며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자율적 준법문화를 확립시키도록 함
-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최신 법 위반 사례/판례 등 법 위반 시 제재/절차 기준을 학습할 수 있으며 업무 행동 지침 및 체크 리스트 등 참고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법 위반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당사 사업수행 및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을 다루고 있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부당공동행위 등	부당 대금결정, 부당특약, 기술 유용 등

3. 편람 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추어 정기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제2장 하도급법의 개요

I. 하도급법의 체계

1. 하도급법의 목적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의 제정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¹⁾

2. 하도급법 적용 대상자

가. 원사업자(原事業者)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연간매출액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제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하도급 분야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함²⁾

다만, 연간매출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함(하도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및 시행령

1) 하도급법 제1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II. 1. 다.

제2조 제4항)

- (ㄱ) 제조위탁, 수리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ㄴ) 건설위탁의 경우 :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ㄷ) 용역위탁의 경우 :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하도급법 제2조 제4항)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사업자를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여 하도급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검다리 사업자를 원사업자로 의제함

- (ㄱ) 어느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것
- (ㄴ)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물량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것
- (ㄷ) 제3자가 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 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법 제2조 제5항 제1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원사업자로 보아 하도급법을 적용함. 따라서 당사의 계열사의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로 의제됨

나.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상 (이하 “중소기업법”이라 함)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적격대상자로는 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등)과 개인사업자가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 지방공사, SPC, 지주회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에 해당함

비영리법인 즉,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 및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 법인은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에 해당할 수 있음

(ㄴ) 업종별로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산총액 기준은 5천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목 관련 별표 1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 할 것

(ㄷ)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당해 기업의 지분 30% 이상인 최대출자자가 아닐 것

○ 사회적 기업 등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중소기업법 제2조 제4항)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 졸업 후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기업

○ 연간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한정)

연간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이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 4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연간매출액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 의제되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규정 등의 보호를 받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동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됨(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가. 법적용 대상 위탁거래 유형 및 공통 성립요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모든 유형의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제조, 수리, 건설, 용역 4개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됨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 4개 유형에 공통되는 「~을 위탁하는」요건과 「~을 업으로 하는」요건은 아래와 같음

○ 위탁(委託)하는

위탁(委託)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법상 위탁에 관한 정의는 없으나 원사업자가 규격, 품질, 디자인 등 사양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정된 조건에 맞추어 작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

하도급법상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의하여 지정된 사양에 따라 작업한 위탁전용물의 전용(轉用)이 곤란한 경우인지, 위탁목적물의 사양 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업(業)으로

업(業)으로 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일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일본 하청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업으로란 사업자가 어느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다른 법률에서 사용된 '업으로'라는 요건에 대하여 그 핵심적 의미를 계속, 반복성에 두고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본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외부 판매용이 아니라 자가(自家)사용을 위한 물품이라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제조 등을 상당한 횟수 반복하고 있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는 경우라면 '업으로'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나.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ㄱ)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물품이란 고체, 액체, 기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체물인 동산을 말하고,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음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란 통상적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물품의 제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그 밖에도 자사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물품의 제조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수행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함. 예를 들어 자사에서 사용하는 공구, 전용기계, 제품운송에 사용하는 포장용 물품 등을 자사 내에 제조 부문을 설치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제조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ㄴ)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물품의 판매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고객에게 물품을 유상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하도급법상 판매에 '임대'가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데, 예를 들어 렌터카 사업자가 임대용 차량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임대'도 판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물품의 임대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물품의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ㄷ)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란 통상적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물품의 수리를 계속, 반복하여 하는 사업자를 말하나 그 밖에도 자사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스스로 수리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행하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의 수행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ㄹ)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건설업자의 해당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위탁의 항에서 설명함

○ 그 업에 따른 물품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고시에 따르면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
- 나. 물품의 제조, 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 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마. 상기 물품의 제조, 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 제조를 위탁할 것

제조 의미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정의 규정은 없음.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하고,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 하는 경우 등)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이러한 제조에는 조립(제품조립, 완성품조립 등), 가공(기계가공, 프레스가공, 판금가공, 제관 가공 등), 부품제조, 금형제조 등이 포함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는 염색, 봉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용접도 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제조 공정 중 이루어지는 운반, 검사 등의 작업이 하도급법상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제조 공정 중에 이루어지는 단위 작업 그 자체로는 물품에 일정한

공작을 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작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위 작업들을 제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다만, 별도 판례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수리위탁

수리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원래의 기능이 손상된 물품에 일정한 공작을 더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함. 단순히 고장 부위의 발견이나 정기적인 부품교환 등에 그치는 보수점검 업무는 수리에 해당하지 않고 보수점검의 결과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부분을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경우 수리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수리위탁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의 2가지 유형이 있음

○ 고객 주문에 의한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고객 주문에 의한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의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리위탁에 해당함

예를 들어 차량 수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차량 수리를 주문받아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리용역으로 볼 수 있음.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수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수리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사업자가 판매한 물품의 보증기간 중에 고객의 주문을 받아 해당 물품을 수리하는 경우도 포함함

○ 자가사용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자가사용 물품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하도급법상 수리위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가사용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사업자가 자사 내에서 수리를 어느 정도로 행하는 경우에 업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사내에 수리부문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리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반면, 대다수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사내에서 행하고 외부에 별로 맡기지 않는 단순한 수리인 경우 또는 사내에 수리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이 없거나 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 ②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
 - ③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시공업자
 -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난방시공업자
 - 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사업자에게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가사용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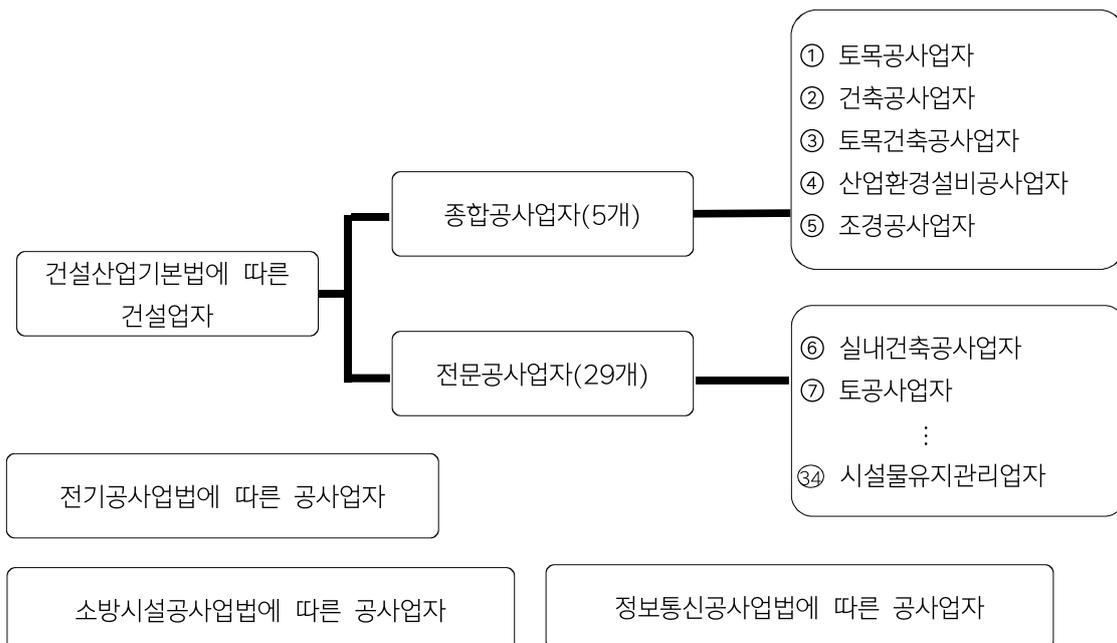
하도급법은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수리행위의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까지 수리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하도급법 제2조 제8항)

라. 건설위탁

○ 건설업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건설업자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일반 사업자에게 위탁하더라도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됨(하도급법 제2조 제9항)

그림 1



어떤 유형의 사업자가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고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3개 업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공사업자)가 하도급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함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위탁받는 경우가 아닌 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경미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같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석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제외),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말함(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경미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됨

○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 따른 건설위탁은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각 호의 건설업자 사이에서, 즉 동일한 업종 내의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건설위탁에 해당하나,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전기공사업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토공사업에만 등록된 전문건설업자가 미장공사업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에게 미장공사를 시공의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시공자력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도급받아 동 공종에 대한 시공자력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위탁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 내 건설공사 위탁이 아니더라도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됨. 즉, 어느 공종의 전문공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와 자기에게 시공자력이 없는 공종을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아 시공자력 없는 공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그 부대공사를 시공위탁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공사 공종에 등록된 전문공사업자에게 그 부대공사를 시공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됨

그 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함³⁾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Q> 당사가 건설공사 성격의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A> 당사가 조선, 해양, 플랜트 업종에서 당사의 주요 사업형태가 아닌 건설공사 성격의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법 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상기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되는 경우 법무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은 적용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ㄱ) 지식정보성과물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식정보란 인간의 창작적 작업을 요하는 것으로 기계적인 노무작업인 역무와 구분됨. 즉,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시, 명령을 작성하여 조합시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지식정보에 해당하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계산, 검색 등 작업을 하는 정보처리 활동은 기계적인 노무작업으로 역무에 해당함

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1. 다. (9)

성과물은 고정된 형태의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나 어떠한 형태(Ex. 전자데이터)로든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야 함. 최종적이고 완성된 정보성과물 뿐 아니라 그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성과물도 지식정보성과물에 해당하며, 지식정보성과물은 반드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하도급법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유형으로 제2조 제1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조 제4호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음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1. 정보프로그램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 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및 특정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의 개발, 공급을 포함한다)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 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치 등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수반한 시스템개발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 영상정보 등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나.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영화와 제12호의 비디오물(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포함)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다. 방송법 제2조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음원, 제4호의 음반, 제5호의 음악파일, 제6호의 음악영상물, 제7호의 음악영상파일

(ㄷ)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다른 지식정보성과물작성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자사에서 프로그램의 작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는 제조회사의 경우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물품에 내장되는 제어프로그램의 작성을 외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게 위탁하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자가사용을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임.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를 다른 홈페이지 제작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이 성립할 수 있음

○ 역무의 공급

역무의 공급에 대하여 하도급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역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

- ①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② 화물 운송, 주선 활동, ③ 건축물 유지, 관리 활동, ④ 경비활동, ⑤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역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의 활동
 - 나. 항만운송,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활동
- 2.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업무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2에 따른 건축물(주거용, 비주거용, 사업시설을 포함)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청소,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운반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나.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조경수 및 관목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프로그램 포함)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활동
 - 나. 전산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또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사진)촬영 등의 활동
 - 나. 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
 수급사업자가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별개의 단위로 위탁받은 경우에는 역무 공급에 해당하나,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의 활동을 포함한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 광고 등의 광고제작, 편집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
 -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의 활동

6. 공연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공연의 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가.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
 - 다. 측량, 지질조사 및 탐사, 지도제작

8.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역무의 자가사용의 경우에도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용역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을 위탁하는 역무가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역무인지 자가사용을 위한 역무인지의 구별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판단함

4. 각 사업자별 규제 내용

구 분	규 제 내 용	비 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선금금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지급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의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의 금지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보존 의무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의무 ▪ 신의성실 준수 의무 ▪ 증거서류 제출 의무 	
발주자의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Ⅲ. 하도급법의 주요 특징

1. 하도급법의 적용기간

가. 조사시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의 조사개시 대상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에 한정⁴⁾
- 다만,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조항 위반에 한해서는 조사시효가 거래종료 후 3년이 아니라 거래종료 후 7년이며 신고사건의 경우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고되었다면, 3년이 경과된 후에도 조사 가능
- '거래가 종료된 날'의 의미

구 분	거래종료일	비고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조 위탁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구 분	거래종료일	비고
건설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나. 처분시효

- 직권인지의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을 할 수 없음
-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시효의 적용이 없음(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2. 하도급법의 주요 특징

가. 강행규정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단, 3년이 지난 해당 위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 4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며, 공정거래법의 경우 그 적용시기는 7년임.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시기를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나. 특별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을 우선 적용

다.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이거나 용역수행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함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원칙적으로 회사의 구매활동, 설계용역위탁, 건설공사위탁, 연구개발 위탁 등의 활동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
-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인지, 또는 적용대상 업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팀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회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수급사업자(A)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수행은 (A)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은 무등록 건설업자(B)가 시공한 경우 회사와 (B)와의 관계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나요? (속칭 '건설업 면허대여' 문제)
 - > 하도급법은 형식상의 하도급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하도급관계를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무등록 건설업자(B)가 시공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 회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진행 중 해당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면 최초 계약시점부터 하도급법 적용을 소급하게 받게 되나요?
 - >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무등록 건설업자와의 계약이 용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의 적용만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위 사안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가 등록한 이후에 새로운 위탁을 하였거나, 당해 공사에 대하여 계약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새로운 위탁부분과 계약변경 분부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 플랜트 공사의 경우, 현장이 해외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모두 국내 사업자인 경우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

제3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I.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법 제3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교부하여야 함

가. 법정기재사항⁵⁾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과 시기
-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작업에 착수하기 전의 의미

구 분	작업에 착수하기 전	비고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계약체결시 또는 변경계약시 법정사항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계속적 거래의 경우	연간 단위의 기본계약 후, 발주서 또는 PO ⁶⁾ 로 발주하는 경우에 기본계약서상에는 확정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한 후 구체적인 납기·수량 등은 발주서 또는 PO에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⁷⁾	분리된 서면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명기

5)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법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1회성 계약 또는 변경계약시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 확정된 사항만을 기재한 후 교부하고, 추후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	

라. 그 외 적법한 서면발급 판단기준(예시)

-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으로 간주⁸⁾
- 하나의 하도급공사에 둘이상의 서면이 존재할 때에는 실제에 부합하는 서면 또는 계약의 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을 적법한 서면으로 봄⁹⁾
- 수급사업자와의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계속하여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계약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¹⁰⁾

마. 서면발급 방법

- 회사 또는 회사의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교부
- 전자메일 또는 웹을 통해 교부 가능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교부

바. 하도급대금 연동제

-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들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연동할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서면 기재 의무화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 사유
 -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 3)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¹¹⁾

6) purchase order의 약자

7) 기본계약서와 발주서 등을 합하여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하도급계약서로 본다.

8)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III. 3 (7)

9)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III. 3. (8)

10) 공정거래위원회 2014. 6. 2 의결 제2014-132호

11)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의 추정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적법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원·수급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 요청 가능
-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받은 후,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함

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것

-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포함함

나. 수급사업자의 확인 요청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시, 공정위의 표준서식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사용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원사업자의 회신 및 추정의 효과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15일 이내 공정위의 표준 서식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함
- 15일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3.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의 보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원본 상태로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단, 기술자료제공요구서는 7년)

가. 보존대상 서면

구분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3	감액 서면	
4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6	검사결과 통지서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금액, 지급 수단, 선금금 및 지연이자 등이 기재된 서류	
10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일과 지급기일이 기재된 서류	
11	원재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 내용과 대금의 공제일, 금액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서류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금액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서류	
13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사유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회 등 대금결정 관련 서류	

○ 위의 서면들은 원칙적으로 원본 형태로 보관되어야 함

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¹²⁾'의 의미

구분	거래종료일	비고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조 위탁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건설위탁	공사가 완공된 날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4.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12) 앞장에서 서술한 공정위의 조사시점인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과 동일하다.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님)

5. 공정위 심결례

- 2024. 12. 20. 의결 제2024 - 36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하여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징금 5천2백만 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구두로 발주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발주는 금지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할 것(전자계약도 무방)
- 원칙적으로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것
-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수정 또는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법무팀에 계약서의 적정성을 확인
- 계약체결시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확정시점에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할 것
- 하도급거래 중 계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할 것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원본상태로 3년이상 보존할 것(기술자료제공요구서는 7년)

- > 기본계약의 체결없이 발주서 또는 PO만으로 발주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가요?
- > 반드시 기본계약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서 등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면에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다만 발주서 등에서는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을 모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분쟁발생시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기본계약을 체결 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서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하도급거래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 >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나, 하도급법에서 정한 법정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 > 현장에서 급히 자재를 요청하고 있는데 내부 절차상 2~3일이 소요되는 경우, 우선 구두발주를 하고 추후 발주서를 교부하면 안되는지요?
- > 서면을 즉시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천재지변과 같은 객관적 사유가 아닌 회사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법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 위임 전결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내부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I.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의무(법 제3조의5)

1.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거래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

- 가. 입찰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 나. 미고지하는 경우 제재
 -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III. 선급금의 지급의무(법 제6조)

1. 선급금의 지급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계약에 선급금 약정의 유무를 떠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 지급(선급금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지급의무 없음)

-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현실로 수령한 경우
 - 수급사업자와의 선급금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의무 발생
-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현실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선급금 약정에 따라 지급 또는 미지급
- 마.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의 의미

구 분	예 시	원사업자의 의무
내 용	발주자가 특정 공종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	발주자가 지정한 공종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자에게만 선급금 지급 ¹³⁾
비 율	발주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지급

- 발주자가 특정 공종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받은 비율만큼 모든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¹⁴⁾

¹³⁾ 단, 발주자가 지정하지 않은 공종의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도 약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금금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 원사업자가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할 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선금금을 지급할 경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그 만기일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가. 선금금의 법정이자

- 원사업자는 15일을 초과하여 선금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15.5%의 법정이자¹⁵⁾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할인료 지급

- 만기일이 법정기일인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기간만큼 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구 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선금금
어음	어음外	
연7.5% 16)	약정 할인료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고 5일후, 60일만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 및 대체결제수단만기일(60일) - {법정기일(15일) - 선금금지급일(5일)} ▪ 즉, 50일에 대하여 연7.5% 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된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선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현금비율유지의무)¹⁸⁾

다. 수급사업자의 선금금 지급보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금금지급보증을 요청하는 경우¹⁹⁾

1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0%를 받은 경우, 각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지급하여야 한다.

15) 개정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 - 21호 「선금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16) 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15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17)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기존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7%로 고정한 공정위의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는 폐지함)

18) V.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서 상술

19)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선금금반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3. 선금금 지급 지연일수 계산의 특칙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

- 원사업자가 선금금지급 법정기일(15일 이내)을 20일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지급보증서 요청을 받고 제출하는데 10일이 걸렸다면 최종 지연일수는 10일임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10일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

4. 기성금과의 관계

○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나, 선금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금금을 일괄 공제할 수 없고 매회 기성마다 선금금 비율별로 공제해야 함

- 선금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함
- 즉, 총 계약금액 1,000만원 중 선금금 100만원(계약금액의 10%) 미지급 한 후 기성율에 따라 기성금을 200만원 지급하는 경우 200만원 중 선금금의 비율인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한 것이 되고(20만원) 선금금 잔액 80만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선금금 지연이자가 발생함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금금으로 간주된 금액만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슈가 추가로 발생함

5.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금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0. 3. 25, 2009두 23181) 선금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한 선금금을 기성금으로 받기로 원사업자와 합의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 선금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 12. 27, 2007두 18895)²⁰⁾

6.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공정위는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이나 기성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초과분만큼 선급금으로 간주

7. 공정위 심결례

- 2021. 2. 16. 의결 제2021 - 03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부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발주자로부터 동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선급금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추가 변경 공사를 지시하였음 	서면 미교부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전 반드시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요청할 것
-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과는 관계없이 15일내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할 것
- 회사가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할 것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등 기타 대체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어음, 대체수단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해당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 계약금에 대하여는 선금금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일관되게 기성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된 금액은 선금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²¹⁾ 또한 회사에서 발주자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으면서 선금금이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선금금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이행보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선금금지급의무가 없나요?
- > 하도급법 제33조에서 과실상계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도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이행보증증서를 요청받고 증권을 제출하는 날까지는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계산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계약에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선금금 반환보증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금금 반환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 >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을 체결시, 수급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정된 후, 15일내 지급하시면 됩니다.

21) 공정위 민원질의 참조 「<http://www.ftc.go.kr/minwon/counsel/faqView.jsp?seq=0004&SCD=07&BCD=08>」

IV.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법 제7조)

1. 내국신용장의 개설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함

가.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자금사정이 취약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하도급대금결제의 확실한 담보 수단이 되므로 원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개설의무를 부여함

나. 원사업자가 면책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 등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개설한 경우

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 거래가 빈번하여 월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도 무방함

2. 구매확인서 발급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가. 원사업자의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나.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3.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과거 관세가 높은 경우에는 본 조항 및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의 엄격한 집행이 수급사업자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그 집행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²²⁾

4. 공정위 심결례

- 2008. 5. 20. 의결 제2008-217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태평양제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5개의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 	어음 할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1. 1 ~ 2005. 12. 31 기간중 피심인 수출용 포장지 등을 (주)원지산업, (주)유진판지공업 등 2개 업체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않음 	내국 신용장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 ▪ 시정명령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들에 통지 ▪ 하도급거래 관련 교육이수 명령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수출할 물품에 대하여 제조 등 위탁을 할 경우, 15일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줄 것
-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시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한 관련 서류 등의 작성·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내국 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수급사업자가 그러한 뜻을 밝혀왔다면, 공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그러한 어려움을 말한 경우에 회사가 면책되기 어려우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문으로 제출받아 접수 후 보관하시면 됩니다.

22)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연보에도 대금미지급, 대금지연지급, 어음할인료미지급, 서면미교부, 부당감액, 선금금미지급, 수령거부에 대하여만 구분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하고 있을만큼 그 집행 비율이 낮다.

V.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법 제9조)

1. 목적물의 검사

-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가. 목적물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협의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며 공정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와 협의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위반임

나. 모든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협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위탁목적물을 검사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기준을 수급사업자와 일일이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법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 목적물의 검사방법, 기준 등을 상세히 작성된 서면 등²³⁾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함
- 역무공급 위탁의 경우 검사의무가 없으므로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다. 검사비용의 부담

- 검사는 원사업자의 의무이므로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될 수 있음

2. 검사결과 통지의무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가. 10일 이내 서면으로 검사결과 통지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3)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위탁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는 무엇인지와 측정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환경 및 검사를 실시하는 횟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10일 이내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합격으로 간주되고, 이 후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대량 납품하는 경우로 샘플검사, 자주검사(무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를 이유로 10일이 경과하였다더라도 반품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반품이 가능한 시기, 반품 사유 및 사후에 불량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상방법 등 처리기준에 대하여 서면합의가 되어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임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검사의 시기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²⁴⁾

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일 평균 물량이 많다는 점과 발주처에 납기 준수 등의 사유는 통상적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대단위 플랜트 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작업 부분이 미미하여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본 조항의 특징

- 명백히 본 조항만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위탁 목적물의 하자나 불합격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한 수령거부 또는 하도급대금미지급, 지연지급 등의 형태로 범위반 사례가 발생함

4.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24)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공정위에서 독자적으로 검사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어려움
- 법위반 신고사건에서 원사업자가 물품의 하자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인지 참작

5. 공정위 심결례

- 2024. 7. 18. 의결 제2024-26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케이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4. 14. ~ 2022. 7. 19.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 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음 	결과 미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 	부당 수령 거부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지급하도급대금 및 법정이자 지급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계약체결시 목적물에 대한 검사방법 및 조건을 자세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 목적물을 납품 받은 후 반드시 10일 이내 합격·불합격 여부를 서면²⁵⁾으로 회신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대량으로 빈번히 거래하고 있어, 자주검사의 방법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10일 후에 발견한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는 것은 법위반 인가요?
-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량거래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의 검사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계약서에 반품 사유 및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5)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품확인서 등에 서명하는 것도 무방하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검사조건이나 방법이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 또는 귀책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반품하는 것 또한 금지되는 건가요?

- > 명백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서에 반품이나 보상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귀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민사상 법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 VMI(Vendor Managed Inventory) 방식의 재고관리는 위법한가요?

- > 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임대, 관리하게 함과 동시에 납품된 물품의 보관장소로부터 원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인출하는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계산하는 사용량 지불방식의 재고관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VMI 방식의 재고관리 방법이 하도급법상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 등은 없으나,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VMI는 수급사업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원사업자의 물류비용절감이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VMI 방식의 재고관리를 하면서 원사업자의 목적물 출고시점을 목적물 수령시기로 보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VI.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법 제13조)

1. 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이 지급기일이며,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60일로 간주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잔금을 수령받은 경우는 수령 후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가. 의의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 자체로 지급 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하도급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됨²⁶⁾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구 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비고
하도급대금지급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²⁷⁾	목적물 인수일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약정이 60일 초과인 경우	목적물 수령 후 60일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약정이 60일 이내인 경우	약정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경우 ²⁸⁾	수령 후 15일 이내	

다. 목적물의 수령일

구 분	목적물 수령일	비고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²⁹⁾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 요청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날	
납품이 빈번하여 월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합의하여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26)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036

27) 이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도급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 발주자가 있는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기성금 또는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이 15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짧은 경우를 적용합니다.

29) 용역위탁의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상 명확한 기준이 없고 용역의 수행을 마친날(하도급법, 오승돈 114page)로 보는 견해 및 목적물을 수령한 날(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종채 192page)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라. 예외규정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공정위의 법집행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주의가 필요함

2. 현금결제비율의 유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범위반 행위임

가. 현금비율의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 50%, 어음 50%로 지급받았다면, 하도급대금지급시에는 현금 비율을 50%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 동 규정은 선금금³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임의로 현금 내지 어음을 지급할 수 있음

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지급받은 기성금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직전에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 이상을 지급하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 후 차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 함

○ 예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수령한 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자	결제비율(현금:어음)	지급일자	현금결제비율
2. 1	50 : 50	1. 8	예외 가능
5. 1	50 : 50	2. 15	50% 이상
5.30	60 : 40	5. 15	50% 이상
6. 1	30 : 70	6. 14	45% 이상 ³¹⁾
8. 1	40 : 60	8. 15	40% 이상

30) 선금금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탁받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30, 6.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 (60+30) / 2

라.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공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여 발주자가 불명확할 경우

- 특정 공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3. 어음만기일의 유지

- 원사업자는 공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는 것은 범위반 행위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받았다면, 공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만기가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는 것은 범위반으로 금지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로 산정함
- 선금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나머지 관련 문제는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와 동일함

4.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³²⁾에 따른 이자 연15.5%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원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공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시 할인료 지급

-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도래한다면 초과된 기간만큼 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32) 개정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 - 21호 「선금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구 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할인료
어음	어음外	
연7.5% 33)	약정 할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한 후 50일이 지나, 60일만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 및 대체결제수단만기일(60일) - {법정기일(60일) - 선급금지급일(50일)} ▪ 즉, 50일에 대하여 연7.5% 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된 할인료를 가산하여 지급

다. 발주자에게 원사업자가 현금을 수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앞서 설명한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위반이며 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는 별도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위반임

5.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포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하도급대금미지급 사건의 경우는 가장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6. 공정위 심결례

- 2020. 8. 9. 의결 제2020 - 24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발생한 하자 관련 추후 책임이 있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대체품을 납품 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하도급 대금 및 이자 미지급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및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33) 개정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15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2024. 9. 30. 의결 제2024-31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우람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23. 6. 30. 신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모두 인수하였음에도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하도급대금 115,434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하도급대금 및 법정이자 지급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발주자가 있는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하도급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 발주자에게 기성금 또는 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하도급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 지급할 것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후이면 초과기간만큼 할인료를 지급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수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대부분의 실무자 분들이 세금계산서의 수령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연결하여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수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문제와는 별도로 회사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나, 이를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아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이가 마무리 되어야 정확한 하도급대금이 산정될 수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명백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인정한다면 반품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데 하자를 수급사업자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협의완료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거나 추후 기성에서 공제³⁴⁾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하도급대금은 지급한 후,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 후 30일로 약정하였으나 목적물 수령 후 50일뒤에 지급한 경우 20일에 대하여 지연이자 15.5%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법정기일인 60일보다 짧은 30일로 약정한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 후 30일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약정된 지급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본건은 지급기일 이후 대금지급일까지 20일분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예외조항인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여지는 없나요?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하게 합의를 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하여 합의가 되었다' 또는 '수급사업자 지위에서 어떻게 거절하겠냐'라고 하며 합의 당시 대등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매출의존도가 원사업자에게 상당히 종속되어 있고 매출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급사업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해당 업종의 특수성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도저히 하도급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예외사유가 적용되기는 극히 어려우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무팀에 자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4) 협이시 차회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Ⅶ.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무(법 제13조의2)

1. 건설하도급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³⁵⁾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하여야 함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기간은 결제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상환기일까지로 하여야 함

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 제조·수리·용역 위탁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하도급에서만 의무사항임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면제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도급법과 상이함

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³⁶⁾

구 분	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하도급계약금 - 선금금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 and 기성주기 2개월 이내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금금}) \times 4}{\text{공사기간(개월수)}}$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 and 기성주기 2개월 초과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금금}) \times \text{기성지급주기(개월수)} \times 2}{\text{공사기간(개월수)}}$

- 계약상 선금금 외에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동 지급보증의 취지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지급보증 기간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만기일까지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35) 2014. 11. 29. 개정, 시행되는 규정이다.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인 계약이행보증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본 장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6) 보증금액의 경우 실무상 보증사의 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보증금액 범위를 숙지할 실익은 적다.

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방법

-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³⁷⁾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의 교부
- 공사기간 중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음

마.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 예외사유³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³⁹⁾인 경우(공동도급일 경우 개별 구성원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 대금이 1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공동도급 전체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⁴⁰⁾

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었으나 공사기간 중 예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 ⊖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해야 함⁴¹⁾

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미이행시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⁴²⁾
-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없음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38)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의 예외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차이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차이점은 이하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39)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40)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 12. 27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제사유로 추가하였고 동 조항에서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말한다.(2017. 6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41)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율, 잔여대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사유 소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나, 현재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42) 제4장 발주자의 의무사항에서 상술

2.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

-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⁴³⁾

나. 계약이행보증의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⁴⁴⁾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의 교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간의 관계

- 원사업자가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기관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토대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됨

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과 면제사유 비교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43) 다만, 수급사업자가 동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하도급법 상 제재 규정은 없다.

44)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 하도급법이 타 법률과 배치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여야 함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시

-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급인(원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5.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하도급법상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없이 경고 또는 재발방지, 시정명령 등에 그친 경우가 있었으나, 2016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중소 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등의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불공정 행위가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공정위가 공사대금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6. 공정위 심결례

- 2022. 8. 10. 의결 제2022-212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30개 수급사업자와 누수 하자보수 공사 등 총 193건의 건설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17,568,744천원)을 지급보증하지 아니하였음 	대금 미보증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명령 부과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하도급공사대금이 1천만원 초과 현장에 대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없다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할 것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건설위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무팀에 확인을 요청 할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전에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지 말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안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 강행규정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VIII.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의무(법 제13조의3)

1.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가. 공시의무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공시 의무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
공시대상 거래	모든 하도급거래
공시 주기 및 시기	반기별 년2회 공시(반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절차 및 방법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
공시 내용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 관련 사항 지급수단 :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각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른 지급금액을 기재 지급기간 : 지급기간 구간별 지급금액을 기재 분쟁조정기구 :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

IX.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1.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원사업자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가. 원사업자의 지급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지연이자

- 원사업자가 가.항의 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2. 원사업자의 면책 사유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⁴⁵⁾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준 경우

3.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포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45) 수급사업자가 지연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지연기간만큼 면책된다.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요 근래 내국신용장 개설과 더불어 본 조항만을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기 전이라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수령 후 60일 이내 관세 등의 환급상당액을 지급할 것
-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후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 만큼 연15.5%의 가산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관세 환급의 기초자료인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협력업체의 지연접수로 인해 해당 자재 또는 제품의 매출발생 및 관세 환급처리 종료로 관세환급이 불가한 경우 미지급사유가 되는지요?

 - > 관세 환급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수급사업자가 지연하여 인도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X.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1.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⁴⁶⁾의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고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함

나.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증액

- 공정이 A, B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경우, 발주자가 A 공정에 대하여 10%의 원도급 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원사업자는 A 공정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의 10%를 증액해야 함
- 원사업자가 공정을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10%를 지급하였다면, A, B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 10%씩 증액하여야 함

다. 수급사업자에게 통보

-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계약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통보의무는 면제됨

2. 하도급대금의 조정기간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증액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증액된 하도급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30일내 증액을 반영해주어야 함⁴⁷⁾

46) 물가변동을 포함한 의미이다.

47) 여기서 반영은 하도급계약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일수만큼 어음의 경우 연7.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경우 원사업자와 금융기관간의 약정된 수수료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3. 하도급대금 감액⁴⁸⁾의 경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가. 하도급대금 감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요구받고 도급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나. 수급사업자에게 통보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다. 증액과의 차이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의무사항이나 감액은 원사업자의 선택사항임

4.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동 조항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48) 여기서의 하도급대금 감액은 후술할 '대금감액'과는 다르다. 여기서의 하도급대금감액은 발주자가 있는 하도급관계에서 발주자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해당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비용이 감액되는 경우이다.

5. 공정위 심결례

○ 2024. 8. 29. 의결 제2024-302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음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백만 원 부과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발주자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면,
 - ① 15일 이내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② 30일 내 하도급계약에 증액을 반영해주어야 함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도 영향이 있나요?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시점 이후로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추가로 증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액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A**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원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선급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 > 물가변동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요구가 있어 작업량이 증가하였으나, 도급대금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 발주자와는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하여 수급사업자의 작업량이 늘어난 후,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수급사업자의 작업량이 늘어나게 된 것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발주자가 이를 반영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는 본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대금지급'에서 다루었던 추가 작업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증액이 없음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내용을 적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 > 본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원사업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계약조항은 추후 서술할 부당특약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하도급계약시 원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이미 물가변동 등을 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증액해줘야 하나요?
■ > 이미 하도급계약에 물가변동을 예상하여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반드시 증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반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XI.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2)

1. 원사업자의 협의 의무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⁴⁹⁾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도 조정협의 가능함)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정협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요청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 등의 납품이 지연되어 공급원가와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임

나.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요건

- 아래의 사유에 따른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②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③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 ④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⑤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아래의 경우는 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49)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HD현대)에 소속된 회사는 신청대상이 된다.

- 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 ②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라 재료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③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 ④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다. 원사업자의 협의의무

-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협의개시가 의무이지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조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⁵⁰⁾의 조정 신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조정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조정협의 신청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요건

- 조정협의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조정협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히거나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이상 차이 나는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하도급대금조정 협의시 입증책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응하여 하도급대금조정협의를 할 경우,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함

5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강제되는 사업자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업자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이 있다.

4.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동 조항만을 공정위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정신청권자가 확대되어 원사업자가 조정협약에 불응할 경우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 등의 사유로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인지 확인 후, 10일 이내 조정협의를 개시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을 받아 하도급대금조정협약이 시작될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어야 하는지요?
-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의무이지 하도급대금조정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범위반만을 회피하기 위해서 협의를 개시한 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범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 >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란 조정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통보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실질적 하도급대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하여 단가조정 관련 지시, 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 포함)에 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만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 원재료 외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는지요?
- > 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 아닌 저가수주 등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의무가 없음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가수주의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4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I. 부당한 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범위반임

가. 성립요건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특약일 것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특수 조건, 과업내용서,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정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말함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것
수급사업자의 이익이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얻게되는 이윤, 기업의 성장, 사업계획의 확대, 기술 축적 등 다양한 유, 무형의 경제적인 혜택을 말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의 유형이나 내용에는 제한이 없음
- 부당성이 있을 것
부당성의 유무는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즉,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특약을 정한 의도와 목적, 특약을 설정하게 된 경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위탁 목적물 등의 특성과 시장상황, 특약 설정으로 인한 효과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

나. 부당한 특약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의 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⁵¹⁾

-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많으나 동 조항은 입찰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하는 조항임

2. 부당한 특약의 간주

- 다음과 같은 사안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함

- ☑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시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 ☑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⁵²⁾

가.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하도급계약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설명회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이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 철근, 콘크리트관 등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 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에 시공부문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용이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분쟁 처리비용을 뜻함
-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이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
-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51)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 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한다.

52)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약정

- ☑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치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는 본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 ☑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강재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입찰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⁵³⁾에 따른 각종 신고, 허가·승인·인가·면허 등의 취득, 명령 또는 각종 수검의무 이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
- 환경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하여 관계법령⁵⁴⁾을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
-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활동⁵⁵⁾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

- ☑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진행중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인허가 수속, 각종 수검 협조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하에 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시 기성금 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마.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설계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당초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함
- 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제조방법, 시공공법, 자재 등을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함

53) 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을 말한다.

5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

55) 자재시험·품질시험·성능검사·계측 교육 등

- ☑️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 재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위탁업무를 다시 작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뜻함
 - 추가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내용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뜻함
 -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완성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목적물이 파손·훼손된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보수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뜻함
 -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기재된 작업공법, 자재,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뜻함

- ☑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 ☑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재료의 재질(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재작업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하는 공사를 말한다)·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는 약정

사.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라 함은 발주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도급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뜻함
-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목적물 등에 하자가 있을 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구매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뜻함
-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뜻함

- ☑ 수급사업자가 완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 ☑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시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당해 목적물(예, 소프트웨어)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예,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는 약정

아.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위탁시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짜(이하 "체결일"이라 한다)를 뜻함⁵⁶⁾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태풍·홍수·지진·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 또는 전쟁·사변·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뜻함
-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형량에 기초하여 판단함⁵⁷⁾

- ☑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손해·누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 ☑ 전염병(예, 조류독감)의 창궐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제작하는 도중에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시스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정

자.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하도급거래의 특성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계약기간, 투입 인력수, 업종형태, 작업지역, 작업환경, 목적물 등의 종류·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정·시공공법 등의 차이를 뜻함
- 간접비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직접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사무실 직원의 급여, 복지후생비 등) 및 이윤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제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함
- 인정범위라 함은 원사업자가 지정한 간접비의 금액 또는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을 뜻함
- 일률적 제한이라 함은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동일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함

56) 실질적인 위탁시점이 하도급거래계약서 체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날짜를 위탁시점으로 본다.

57) 즉,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무겁게 지워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다만,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하도급거래 규모, 목적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은 반드시 견적기준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사업자가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기준(예, 토목현장 6%, 건축현장 4%)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예, 5%) 범위내에서 계상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이행, 선금금이행, 하자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단가에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는 약정

차.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이라 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완료, 완공한 날까지를 뜻함⁵⁸⁾
-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원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약정
- ☑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카.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위탁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58)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위탁받은 일시, 하도급대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말함

-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내용증명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함

-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내용의 확인을 일체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이미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으로 인한 공기 또는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

타.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계약이행 보증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유가증권 형태로 보증기관의 명의로 보증하는 것을 말함
-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소멸한 날 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을 포함)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이행을 보증기관의 명의로 보증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

파.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 함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말함

- ☑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원사업자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원사업자의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수급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거래 관행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

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신규 기술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평가전문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산출한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동 약정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이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이 때 원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은 제외한다), 정보 등에 대한 권리귀속관계, 제공 및 활용 범위 등을 사전에 공정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설계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비 등이 아닌 단순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위탁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예, 승인도) 등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원사업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거.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비밀준수의무라 함은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고지하는 행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행위,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정보, 자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 자신의 정보, 자료 등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비밀 준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약정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원사업자에게만 계약내용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예, 업무상 필요)를 두어 사실상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약정

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보증 기관의 재무상태, 보증 영역, 불공정 약관 여부, 수급사업자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함

- ☑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요구하는 약정

더.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 계약책임이라 함은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전제로 수급사업자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계약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가해행위를 했을 경우, 그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고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채무를 의미함

- ☑ 수급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실질지배자 등 제3자가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 ☑ 고가 사급재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약정

러.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검사 비용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한 목적물에 대한 최초 검사의 비용을 말한다. 단, 검사의 불합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보완한 이후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의 검사비용은 제외함
- 동조항의 위법성은 하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납품한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사 비용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검사항목, 검사기관 등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발주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등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머.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검사결과 통지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함

- ☑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원사업자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약정
- ☑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재검사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안전조치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화·추락·충돌 등 인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함
- 보건조치라 함은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 건강장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함

- ☑️ 수급사업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요소의 제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의 다른 수급사업자와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외에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장비 또는 수급사업자의 단독 공정에 사용되는 안전장비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서.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계약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의미함
- 부당특약의 유형 제5호 가목의 위법성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하도급거래 규모,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계약내용이 공정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정한다는 약정 (단, 원사업자의 특정 규정 및 지침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이전에 교부된 경우는 제외)
- ☑️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약정
- ☑️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

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라 함은 발주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도급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위탁내용과 대금지급조건 등 위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의미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하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의미함
- 동조항의 위법성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을 수급사업자의 노력만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계약 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 또는 의무사항이 귀속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발주처와 원사업자 간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한다는 약정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약정

저.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동조항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거래기간,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 ☑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예, 노무, 자재, 장비)에 대비하여 추가 지급(이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 ☑ 하자담보책임을 대한 기산점을 수급사업자의 위탁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의 위탁종료일로 한다는 약정

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이 멸실, 훼손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함
- 동조항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소유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였는지 여부 등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준수 여부와 자재 등의 멸실, 훼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수급사업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존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 없이 수급사업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 천재지변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 하자담보책임을 대한 기산점을 수급사업자의 위탁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의 위탁종료일로 한다는 약정

커.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동조항의 위법성은 목적물 등의 특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 상황,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상승, 납품조건 및 도면내용에 대한 견적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약정
- ☑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일체 또한 즉시 포기하여야 한다는 약정

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 함은 추가 비용, 지체책임 등이 발생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함
- 동조항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수령한 후 신속하게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준수 여부와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수급사업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존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자재 등이 불량으로 판정되더라도 납기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약정
- ☑ 공급받은 자재 등의 수량이 부족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운반·보관비용, 지체상금 등은 별도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 납기지연일자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지연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지체상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

3.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원칙적 과징금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포스코 ICT 심결례에서 성능유보 명목의 특약 조항을 부당특약으로 보아 무효로 본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 공정위의 적극적 적용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향후 하도급법 관련 신고사건이 발생한 경우, 동 조항을 근거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한 계약조항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음

4. 공정위 심결례

- 2020. 10. 14. 의결 제2020-280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방서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함 	부당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건조 관련 임가공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1일~14일을 지연하여 서면을 발급함 	서면 지연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6개 업체 대상 입찰을 실시한 후,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부당 하도급 대금결정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과 1,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 2024. 6. 12. 의결 제2024-234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와 위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 	부당 특약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업무상 TIP**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할 경우 새로 추가되는 항목이 본 편람 부당특약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
-

Q&A**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유보금 설정이 언제나 부당특약인가요?

 - > 모든 유보금의 설정을 부당특약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보금 조항이 부당특약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사안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보금은 부당특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 설정여부에 대하여 별도 질의를 하고 있으므로, 유보금 설정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II.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법 제4조)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시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위반임

가. 성립요건

○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하도급 위탁을 할 때 목적물 등에 대한 납품대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탁할 때 정해 놓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감액(하도급법 제11조에 의하여 규제)과 구분되는 개념임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일 것.

같거나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

- ☑ 목적물 등과 같은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 ☑ 종전에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 ☑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 ☑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 ☑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 부당성이 있을 것

부당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용, 수단,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 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 구체적인 고려요소로는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성실히

제공하였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운송·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 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단가만 명시(단가 합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경우
- ☑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상태의 생산량 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 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 ☑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 ☑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로 발주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만큼을 인하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 ☑ 해당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 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하도급 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 주 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추가시키고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 갱신 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 ☑ 설계변경 등에 따른 신규항목 등에 대한 물량 및 단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작성한 변경 내역서를 제시하며, 변경 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여 신규항목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 ☑ 기타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공정·타당하지 아니한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하도급받도록 강요할 것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받도록 요구하면서 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의 중단이나 다른 거래에서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하였는지 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불응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간주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8가지 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됨⁵⁹⁾

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5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 14296 판결

○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 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⁶⁰⁾

- ☑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두 종류 이상의 목적물 등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 법외행위 예시

- ☑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60)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 ☑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임
- 법위반 행위 예시

- ☑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⁶¹⁾
- 법위반 예시

- ☑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61) 수급사업자별로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
-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 범위반 예시

- ☑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취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마.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는 하도급대금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였는지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자율성이 제한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로 판단
- 낮은 단가란 결정된 단가가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⁶²⁾
- 범위반 예시

-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62)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바. 수의계약 계약체결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⁶³⁾
 - 하도급법 시행령이 정하는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⁶⁴⁾

- 사.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거나 현장설명 한 경우 입찰 참가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최저가격 투찰자와 투찰된 최저가격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⁶⁵⁾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⁶⁶⁾
 - 추가협상 뿐만 아니라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
 - 범위반 예시

- ☑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3)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64)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

65) 공정위 2010. 4. 1 의결(약) 제2010-043호

66) 정당한 사유로는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경우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계약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는 새롭게 인화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절차 및 그 결정된 내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⁶⁷⁾
- 범위반 예시

-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3.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원칙적 과징금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원사업자가 동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함

67) 공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새롭게 하도급대금을 인하 결정을 하게된 사정과 과정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③ 인화된 하도급대금의 환원이나 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추후 이를 실현했는지 여부, ④ 새로이 인화된 하도급금을 결정한 사정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부담의 분담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정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정위의 집행은 위의 예시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적발·제재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신고포상제 도입⁶⁸⁾

4. 공정위 심결례

○ 2024. 4. 22. 결정 제2024-011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에쓰와이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11. ~ 2019. 12.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 2. 20.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 7,000만 원 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 5,00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부당 대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5. 24. ~ 2021. 5. 27. 기간 동안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 	서면 미발급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백만원 부과, 검찰 고발 	

○ 2021. 9. 9. 의결 제2021-23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태양금속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어음 할인료 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품목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품목들에 대해 종전 단가 대비 4.5%, 2%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 	낮은 단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명목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음 	낮은 단가 결정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3천만원 부과 	

68) 2015. 7.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 2020. 5. 11. 의결 제2020-10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제조 임가공을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함 	서면 미발급/지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엔진 관련 부품들의 납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함 	일방적 단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208억 7백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 2020. 8. 10. 의결 제2020-214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음 	부당 위탁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관련 임가공을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함 	서면 미발급/지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성향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음 	일방적 단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과징금 36억 14백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목표가(예정가)를 공개하고 예정가내 입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음을 공지할 것
- 목표가(예정가)의 산정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할 것
- 입찰시 낙찰자⁶⁹⁾와 추가 가격협상을 하지 말 것
- 수의계약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가격을 정할 것
- 계속적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원가절감 등을 사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말 것
- 발주량 증가, 원재료 하락 등으로 합리적 사유로 대금 감액에 합의한 경우, 합의 이전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말 것
- 수의계약시 타수급사업자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면서 단가를 낮출 것을 종용하는 행위는 하지 말 것
- 낮은 단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주량 또는 규격 등을 허위로 제공하지 말 것
-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은 채 업무량을 일방적으로 늘리지 말 것
- 단가를 확정하지는 않은 채 위탁한 후, 추후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위탁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군데 이상의 거래선이 필요하여 최저가 입찰사업자 외에 차상위 입찰 사업자와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가 가격 협상은 불가한가요?
- > 차상위 입찰 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은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 기존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 외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견적서를 기존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범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보여주며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69) 여기서의 낙찰자는 예정가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수급사업자를 의미한다.

Q&A**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입찰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공지가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입찰을 해도 무방한가요?

■ >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지만으로 모든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가를 공개하고 모든 입찰자가 예정가를 벗어나 입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예정가내로 입찰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 적법하게 재입찰을 실시하고 수차례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가요?

■ > 수 차례 유찰되었다는 것은 원사업자가 예정가를 부당하게 낮게 산정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객관적 근거없이 예정가를 낮게 잡고 수차례 유찰 후, 낮은 단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 여러 수급사업자들에게 견적서를 받는 행위가 입찰인가요?

■ > 원칙적으로 수개의 사업자들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행위는 입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개의 사업자들에게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장 낮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계약체결할 것을 밝힌 경우에는 최저가 경쟁입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견적서를 받는 방식이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개념적 표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입찰관련자들이 이를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념적 표식으로는 “2개 이상의 입찰 참가자” 및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경쟁자를 통한 낙찰자 선정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수급사업자들에게 예정가를 공개하면서 견적서를 제출받는 행위는 입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와 가격을 별도 협의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합니다.
 - >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업체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입찰의 경우에도 가격에 대하여 추가 협상이 금지되는 건가요?

■ > 범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쟁입찰의 개념적 표식을 갖추었는지와 입찰관련자들이 이를 경쟁입찰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심의입찰을 실시하면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밀봉견적서를 받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을 두고 있는 사안에서 해당 심의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과거 발주사례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 목표구매가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견적서를 받은 후, 견적이 이하로 목표 금액을 설정하여 입찰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이 되는가요?

■ > 단순히 견적서를 받은 후, 그 이하의 금액으로 목표가를 설정, 입찰을 실시하였다는 점만으로 범위반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 금액이 타당한지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당 견적 금액이 높다는 판단하에 견적이 보다 낮은 금액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입찰을 진행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이 합리적 근거없이 단순히 견적이 이하로 목표가를 설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범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2014년초 회사는 견적가를 받고 입찰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목표가를 해당 견적가보다 낮게 설정하여 진행한 입찰에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범위반에 해당된다는 조정 의견을 제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나, 해당 사안이 공정위로 이관될 시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III.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1. 물품이나 용역의 매입·사용 강제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법위반임

-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특정한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구입처를 지정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 단, 동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될 수 있음

가. 성립요건

○ 구매강제의 목적물

구매강제의 목적물은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이며, 이는 하도급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하도급 위탁업무와 관련이 없는 물품, 장비, 역무도 강제구매 대상 목적물에 포함됨

○ 구매강제 목적물의 공급자

구매강제의 목적물의 공급자로는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됨

○ 매입 또는 사용

매입 또는 사용이란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강요하는 행위

강요하는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① 매입 또는 사용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는지 ②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개시하는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목적물의 구매를 요청하였는지 등을 고려

2. 정당한 사유

- 위탁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3.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공정위에서 특별히 본 조항을 문제 삼은 사례는 찾기 어려움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제품, 자재, 용역 등의 사용을 요구하지 말 것
-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함

IV.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법 제8조)

1.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아니면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법위반임

가. 성립요건

- 하도급 위탁이 성립하였을 것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위탁이 성립하여야 함 여기서 위탁의 성립시점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시점이나 계속적 하도급거래인 경우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규정하고 납품수량, 단가, 시기 등구체적인 발주내용은 개별 주문서에 의하여 발주가 되는 경우 해당 주문서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 성립시점으로 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함⁷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음

-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 회생절차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의 착공을 거부하여 납품시기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⁷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는지 여부는 위탁취소의 사유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위탁취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탁취소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부당한 위탁취소의 예시

- ☑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 사양변경, 모델단종, 생산계획 변경, 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 취소, 중단 등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하도급위탁을 한 후 원사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용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기가 상당히 지연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간접비 등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장비 등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개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해당 금형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부품을 납품하도록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부품에 대한 약정수량 중 일부만을 수령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⁷¹⁾

2. 부당한 수령거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아니면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위반임

가. 성립요건

-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것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봄(하도급법 제8조 제3항)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의 범위, 계약이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71) 공정위는 이 밖에 상기 사례 외에 목적물 등의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한 목적물의 품질, 성능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목적물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이 오손, 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당한 수령거부 예시

- ☑ 하도급계약서에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하도급계약서에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사기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 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하도급계약서에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겼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목적물의 납기준수가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발주취소, 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판매부진, 생산계획 변경, 사양 변경, 생산설비 부족, 공장 해외이전 등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하여 완성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 구두로 추가 위탁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원사업자가 동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함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공정위는 동 조항을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규정함
-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신고포상제 도입⁷²⁾

4. 공정위 심결례

○ 2022. 9. 16. 의결 제2022-240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티제이이노베이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다른 부품 거래처의 납품지연, 고객사의 사정 등으로 생산계획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행위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부당한 위탁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목적물의 검수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음에도 납기일이 임박한 2020. 6. 9. 검수를 받지 않으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부당한 수령 거부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지 말 것
- 정당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정산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 불량품 판정 또는 하자 발생 문제시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물품을 수령할 것

72) 2015. 7.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계속적 거래에서 물품의 하자가 발견되어, 추후 입고 물량부터는 물품수령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 물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물품을 수령 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양서나 제공된 설계도면 불일치 등 명백한 사유로는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절 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숨은 하자 등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즉, 물품을 수령함은 물론 하도급대금 지급 역시 완료한 후 별도의 소송으로 귀책 당사자를 판단, 정산하여야 합니다.
 - > 위탁물품이 계약상 목적물 납품장소로 수급사업자가 제공하였으나 검사 등을 이유로 납품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 수령이 되는 건가요?
 - > 납품증명서를 교부하여야만 회사가 수령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고 납품장소로 제공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령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검사결과를 10일이 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9조 위반에 해당되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납품 목적물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으로 향후 안정적 자재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거래를 중지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해도 되나요?
 - > 수급사업자가 경영난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는 등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제작되어 있는 물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만약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에 관련한 계약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제작되었거나 제작중인 위탁물품은 인수하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후, 거래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건설현장에서 예정보다 공기가 지연되어, 당초 납기일에 자재를 공급하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기일을 늦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하나요?

- > 예정보다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점은 원사업자측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기일을 늦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제작이 되지 않았고 납품기일을 늦추는 것이 재고관리나 여러 사정에 의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시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만일 수급사업자가 이미 목적물을 완성한 상태에서 납품 준비중이었다면,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재고관리 비용 등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발생이 확실한 상태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V.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1. 부당반품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범위반임

가. 성립요건

- 목적물 수령한 이후 반품하였을 것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목적물 등을 수령하고 난 후에 해당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것
여기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위탁계약 체결,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의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 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 부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

나. 부당한 반품행위 예시

- ☑ 거래상대방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
- ☑ 원사업자가 공급한 사급재 불량으로 목적물이 불합격되었으나 반품하는 경우
-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으나 이를 사유로 반품
- ☑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2.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와와의 차이

- 목적물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
-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였다면 부당반품이며,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납품받기도 전에 그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한 위탁취소임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은 행위 시점으로 구분됨⁷³⁾

73) 위탁 후 납품 전에 위탁을 취소하였다면 위탁취소가 되고 납품하였으나 이를 원사업자의 지배영역에 두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수령거부, 지배영역에 들어왔으나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부당반품행위가 된다.

3.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원사업자가 동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함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공정위는 동 조항을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규정함
-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신고포상제 도입⁷⁴⁾

4. 공정위 심결례

- 2008. 3. 4. 의결 제2008-075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롯데쇼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05. 4. 29. ~ 2007. 1. 18. 기간 중 (주)세중통상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롯데마트의 기획 브랜드 상표인 '해피바이' 또는 '루드라' 상표를 부착한 선풍기, 전기요, 전기장판 등 11개의 생활용품을 제조 위탁한 후 납품 물품에 대하여 각 점포의 검수장에서 검사 후 매입을 확정하여 판매 하다가, 2005. 7. 2. ~ 2007. 3. 28. 기간 수급사업자와 계정상품 등 특정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은 기간 종료후에는 반품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판매 과정에서 팔리지 아니하자 총 108,189천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음 	부당 반품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과징금 약 47백만원 부과 ▪ 공표명령 	

74) 2015. 7.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일방적인 반품은 금지
 - 귀책사유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는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것
-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수급사업자와 무검사 또는 샘플 검사하기로 약정이 되어, 납품 자재를 수령하였으나 이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반품하면 범위반인가요?
 - > 수령한 이후 10일이 경과한다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일이 경과된 후 발견된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는 것은 부당한 반품이 됩니다.
 - > 납품 물량의 과다와 납품 물품의 특성상 10일내 모든 검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경우에 반품하지 못한다면 원사업자에게 너무 불리한거 아닌가요?
 - > 이러한 경우, 기본계약체결시 클레임보상협정 등을 별도로 체결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품에 대하여는 반품할 수 있으며 반품의 절차와 보상방법 등을 사전에 약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범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이상으로 설정하는 행위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의 반품처리 방법은 없나요?
 - > 물품의 하자가 있으나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처리 방법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논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 결과가 분명해지기 전에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

VI. 감액금지(법 제11조)

1.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되며, 감액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사유와 기준 등의 사유를 적은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가. 성립요건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이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조는 하도급 위탁시 정한 하도급 대금을 위탁 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에 반하여 하도급 위탁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닌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해당함
- 감액행위
감액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며 감액의 명목이나 방법, 감액 크기의 다소에 상관없이 위탁 이후에 행하는 감액은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에 해당함

나. 감액행위의 위법성 조각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할 때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사후에 감액하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성립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의 정도, 감액의 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적법한 절차 준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감액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감액시 하도급법에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액 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적시된 서면을 제공하여야 함(실무상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감액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계속적 거래에서의 하도급대금결정과 감액의 구분

- 계속적 거래의 경우 이미 발주한 수량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수량을 발주하면서 단가를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대금결정'에 해당
- 이미 발주한 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
- 수량없이 단가만 확정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
- 가단가 등으로 발주 후,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

2. 감액금지 위반의 간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위반으로 간주

- ☑ 위탁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 전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행위
-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나 수급사업자의 과오로 과도하게 감액하는 행위
- ☑ 사급제 또는 장비를 제공하면서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납품 시점에 비하여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하락하였음을 사유로 감액하는 행위
-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법 위반 예시

- ☑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경품 등의 마케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중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상 수급사업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나. 단가인하 합의 후, 합의전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 하는 경우

○ 합의 성립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합의한 단가를 소급적용했는지 여부로 판단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다.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지나친 감액의 해당여부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변경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⁷⁵⁾

○ 법 위반 예시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라. 원사업자에게 실질적 손해는 없으나,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사유로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과오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 위반 예시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사급재 또는 장비를 제공하면서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행위

○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가 당시의 동일·유사한 물품·장비 등의 시장가격이나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

- ☑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 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1회차 대금지급 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75) 이에 더하여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납품 시점에 비하여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하락하였음을 사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 위법행위

-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 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 ☑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지연이자

○ 정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감액일 경우는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여전히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 발생

4.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원사업자가 동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함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76)

- 공정위는 동 조항을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규정함
- 원사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신고포상제 도입77)

5. 공정위 심결례

- 2024. 11. 10. 의결 제2024-341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프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명령 및 과징금 79백만원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사전에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을 교부할 것
- 사전에 감액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감액의 조건, 방법 등을 약정할 것

76) 동 규정 은 2011년 개정시 '부당한 감액금지'에서 '부당한'이 삭제되고 '감액금지'로 개정되었다. '부당한'이 삭제된 취지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함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다.

77) 2015. 7.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Q&A**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의 불량으로 원사업자가 조립한 완성품이 불량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량의 품목이거나 숨은 하자 등에 대하여는 관련 보상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클레임보상협정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정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하도급대금 감액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은 사례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이러한 경우에 그 감액범위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완성품 전체와 간접비(운송비 또는 임률 등)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범위반 행위로 간주되므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시어 최대 완성품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은 반드시 종이 문서로 교부하여야 하나요?
 -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감액시 ① 그 사유와 기준을 적고,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과 ③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④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고 상호 확인 가능한 웹(Web)에서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표시 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면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전에 예정된 납품 물량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 물량이 증가 하였으나 계약변경 또는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액금지에 해당하나요?
 -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물량만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감액금지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본계약서 물량증가시에 하도급대금증액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경우에는 동 조항은 부당특약금지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동 조항과는 별도로 감액금지로도 처벌받습니다.
-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건설하도급과 같은 경우, 현장에서의 사정으로 예정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도 법위반 인가요?

- >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감액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사전에 명확히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인 하도급대금을 표시한 후, 사후 물량, 자재비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음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조항에 삽입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금지 조항의 취지상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 > 수급사업자가 하자, 납품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액할 수 있는지요?

- > 명백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의없는 감액은 위법합니다. 여기에서의 합의는 손해에 대한 보전방법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으나, 감액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1.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
- ☑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가. 성립요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것
원사업자가 위탁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규제대상이므로 위탁업무와 무관한 물품, 장비를 구매하게 하거나 자기 이외의 자에게 구매,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 위반이 아닌 하도급법 제5조 위반임⁷⁸⁾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할 것
유상으로 사급재를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 대가 지급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 기일전으로 약정하는 행위는 금지
-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할 것
일반적인 시장가 이상으로 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며, 여기서 일반적인 시장가란 원사업자가 해당 물품, 장비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하는 공급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지급된 원재료 등을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원사업자에게 납품하여야 할 위탁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

78) 원사업자가 '사게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한'이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원사업자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2.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당해 조항만을 별도로 집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위탁 목적물의 품질 향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장비 등의 구매나 대여를 강요하지 말 것
-

VIII.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1.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

가. 성립요건

- 경제적 이익

재물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포함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원사업자 자신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뿐만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도 금지되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경제적이익을 일부 누릴 수 있는 경우도 포함

- 제공하도록 할 것

원사업자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도급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를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을 부득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나.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예시

-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2.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경제적 이익제공 관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3. 공정위 심결례

- 2024. 4. 17. 약식 제2024-063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조선내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 사건 공사 외 피심인이 수행하는 타공사의 협력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에게 139,700천 원을 송금.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수급사업자에게 회사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와 상관없는 요구를 하지 말 것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법무팀과 사전에 협의할 것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본 조항에 따라 회사가 처벌받나요?
- >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은 사업자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질의와 같은 임직원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 윤리규범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법 제12조의3)

1.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
-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가. 성립요건

- 기술자료에 해당할 것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타 사업자의 정보,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비밀로 관리' 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⁷⁹⁾
 - ✓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⁸⁰⁾
 - ✓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⁸¹⁾
 - ✓ 단, 수급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낮아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유지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함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은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음⁸²⁾
-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면 기술개

79) 자료에 대외비, 컨피덴셜(Confidential), 극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와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시 또는 명령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0) 임원, 해당 업무 담당자 등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암호 설정, 시정장치, 지문인식장치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81) 임직원, 거래상대방 등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한 경우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2)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을 포함한다.

발, 생산, 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거나, 그 정보·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⁸³⁾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 함은 지식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발명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됨⁸⁴⁾

○ 제공요구행위에 해당할 것

- '기술자료의 제공'이란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기술자료가 전자파일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접속, 열람 허용 등을 포함),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상대방은 "본인 또는 제3자"로서 상대방에는 당해 수급사업자 외에 모든 자가 해당될 수 있음

- '요구하는'이란 원사업자가 강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을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나. 정당한 사유 및 서면교부의무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범위반이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 경우에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다만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라 하여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83)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현재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라든지 잠재적으로 유용한 경우 또는 간접적으로 유용한 정보,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소극적 정보를 포함한다. 다른 사업자가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 자료도 해당된다.

84)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하는데 필요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예로는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범위반임⁸⁵⁾)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 ☑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상기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되 가급적 공정위의 표준 서식 '기술자료 요구서'⁸⁶⁾를 사용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서면 교부의 방법은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⁸⁷⁾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

- 정당하게 서면을 교부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이전에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자료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면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한 경우
- ☑ 기본계약서, 특약서 등에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 ☑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다.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 의무

-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함
-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하면 비밀 유지계약서에는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85)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원사업자가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86) 별첨 서식 참조

87)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 기술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 ☑ 제4호 또는 제5호 위반에 따른 배상
- ☑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2.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위반임

가.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이란

-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하게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

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 행위의 판단

-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전에 제공된 경우에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적시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합의된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임
-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 기술자료 사용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 기술자료 사용·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범위, 사용 대가 유무 및 금액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구 분	법 위 반 행 위 예 시	비 고
거래이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개시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구 분	법 위 반 행 위 예 시	비 고
거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3. 적용시점

-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됨

- ☑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⁸⁸⁾
- ☑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경우⁸⁹⁾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므로 업무진행시 특히 주의가 필요함

4.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원사업자가 동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함
- 동조 위반에 한해서는 조사시효가 거래종료 후 3년이 아니라 거래종료 후 7년임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공정위에서 기술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음
- 원사업자의 범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신고포상제 도입(기술자료 유용행위)⁹⁰⁾
- 엘지하우시스 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래 2015년 엘지화학, 2017년 한국화낙, 에이에스이코리아, 코텍 3개 기업의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사례를 적발하여 갈수록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임
-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임

88) ① 수의계약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 ②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89) ① 원사업자가 기존 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원사업자가 기존거래와 관련되거나 또는 무관한 별도의 거래에 대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거나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유용하였지만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90) 2015. 7.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5. 공정위 심결례

○ 2018. 11. 13. 의결 제2018-339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산인프라코어는 단가인하를 위한 부품공급업체 변경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에어컴프레셔 등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 	기술자료 제공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제작도면 등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공, 유용하였음 	기술자료 유용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부과 3억 82백만원 부과 및 법인/개인 검찰 고발 	

2019. 6. 24. 의결 제2019-136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프레임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 	기술자료 제공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제작도면 등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공, 유용하였음 	기술자료 유용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부과 4억 31백만원 부과 및 법인/개인 검찰 고발 	

○ 2020. 8. 13. 의결 제2020-144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표준서, 개선자료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음 	기술자료제공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제공요구서를 발급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음 	기술자료유용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9억 7천만원 부과 	

○ 2024. 11. 27. 의결 제2024-357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5,400만원 부과, 검찰 고발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

- 수급사업자에게 도면, 상세견적서 등을 요구 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반드시 교부할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무팀에 문의할 것

- > 기술자료 요구시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반드시 사전에 교부해야 하는지요. 사후 교부는 안되나요?
■ > 하도급법은 관련 내용들을 협의하여 사전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교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나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범위반에 해당됩니다.
- >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회사 제품과의 호환성 검사 등을 위해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범위반인가요?
■ > 기술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범위반입니다. 다만 사례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범위반이 아니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술자료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요건으로 하는데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 실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도면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도면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서도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기술자료제공요구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표명하면서도 실제 법집행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즉, 절차위반에 대하여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범위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X.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법 제17조)

1. 부당한 대물변제

-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범위반임
- 원사업자가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물변제시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가. 원칙 - 대물변제 금지

- 기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강요, 권유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대물변제에 동의한다는 가장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7. 3. 30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

나. 예외

-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허용함

-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대물변제시 제공하여야 할 자료 및 제시방법

- 예외적인 사유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 대물로 변제하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를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⁹¹⁾
- ☑ 전 항의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⁹²⁾

-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단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91) 사본을 포함한다.

92)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⁹³⁾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⁹⁴⁾

- 자료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 전 물품의 권리 또는 의무관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자료를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함

라. 대물변제시 서면제공의무 및 보관의무

- 원사업자는 자료를 제공한 후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고 원·수급사업자 모두 서면을 보관하여야 함

- ☑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 자료의 주요 목차
- ☑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받았다는 사실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대물변제의 경우, 신고사건에서 적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건설사에서 자금사정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동산으로 변제한 후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 신고가 많음

3. 공정위 심결례

- 1986. 3. 12. 의결 제86-221호

93)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94)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도달 시간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제일모직(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남성복, 숙녀복등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써 1985.4.16부터 5.4까지 도남상사와 40개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10,066,200원 상당의 남성복(갤럭시 간이복, 갤럭시시트)을 판매하고 기재와 같이 동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에 9,179,200원을 공제처리한 사실이 있음 ▪ 1985.12.1부터 1985.12.31까지 세진직물외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7,980,000 원 상당의 여성복(라보떼 코트)을 판매하고 동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에 3차에 걸쳐 총13,300,000원을 공제 처리 한 사실이 있음 	우월적 지위남용 및 부당한 대물변제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 범위반 사실 공표명령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당초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현금,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과 다르게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
- 판매 대리점에서 물품을 강제로 할당한 후(속칭 물량밀어내기) 해당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공제하는 행위 금지

Q&A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대물로 변제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대물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합의시 평가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범위반에 해당합니다.
- >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합의한 경우, 평가금액은 반드시 공시지가로 해야 하나요?
- > 공시지가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객관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가격이 클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합의의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원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분쟁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진정으로 합의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 당시 수급사업자의 사정과 대물변제하는 물품의 평가가액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는 그 당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물품의 평가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XI.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1. 부당한 경영간섭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는 법위반

가. 부당한 경영간섭 간주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아래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나. 부당성 판단기준

- 경영간섭 행위의 부당성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로서 그 행위가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경제 발전 도모라는 공익을 위한 것인지,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비용 절감·품질 향상 등 효율성 증진 효과 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여건이나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다. 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마.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원사업자가 관계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지급 또는 직접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금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SG 관계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원사업자가 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부당한 경영 간섭에 대한 건만 적발하여 처벌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이는 부당한 경영간섭이 하도급대금감액과 같은 다른 조항의 위반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임

3. 공정위 심결례

- 2022. 11. 8. 의결 제2022-268호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사 건 명	(주)포스코케미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사 실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였음.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부당한 경영간섭
행 정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8천만원 부과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수급사업자의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개입 금지
- 위탁업무의 품질, 안전관리 문제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지시 금지

- > 수급사업자에게 2차 벤더를 지정하는 것 역시 경영간섭인가요?
- > 위탁 물품의 목적상 2차 벤더가 지정되어야 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와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차 벤더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없이 2차 벤더를 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 플랜트 건설 같은 경우 작업의 위험성이 높아 일용직 노동자를 제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작업 인원 등을 승인받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업무의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자격을 가진 근로자나 근무년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플랜트 공사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면 특정 공종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시 특정 공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법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관여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수급사업자 내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통칭 합니다. 즉 수급사업자의 내부 임원 승진시 특정 인물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당한 경영간섭인가요?
- > 공정위에서 주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등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부당한 경영간섭인가요?
- > 공정위 FAQ자료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Ⅹ.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1. 보복조치의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①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②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거나 ③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거나 ④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범위 반임
- 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법에 따른 권리행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는 범위반임

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신고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신고한 경우로 해당 신고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 상 유효한 신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신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범위반이 아님이 판정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

나.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 원재료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다. 관계 기관 조사 협조

- 관계 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수사기관 등을 의미함

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

- 하도급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시 조사대상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동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함

마.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시

-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발주자로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거래 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등을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 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 ☑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등을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발주물량 축소, 원재료, 자재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 기타 합리성,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 방법을 활용해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등을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복조치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원사업자에게는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를 당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원사업자가 동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함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보복조치만을 집행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벌금이 3억으로 증액되었고, 동 사유로 고발시 5.1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예상됨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하였거나 하도급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 합리적 사유없이 거래를 종료하거나, 하도급물량 등을 줄이지 말 것
-

XIII.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1. 탈법행위의 금지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법 위반임

가. 성립요건

-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은 형식을 갖춘 행위나⁹⁵⁾ 하도급법을 준수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위반하는 행위⁹⁶⁾
-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나. 탈법행위의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2. 법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양벌규정 :법인은 물론 별도로 임직원(행위자)에게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주목할 만한 집행동향을 보이지 않으나 향후 다양한 형태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95) 건설에서 공동수급형태를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수급이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 실제 업무내용이 일방적 지시·종속 관계로 이루어지며, 전반적으로 양당사자간의 지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에서는 이를 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96)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 중 일부인 53억을 현금으로 입금한 뒤 당일 다시 인출한 사례에서 공정위는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

업무상 TIP**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거래상대방이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법무팀으로 확인 후 진행 할 것
-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금금 포기 각서 또는 공문을 요구하지 말 것

Q&A**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해양플랜트 사업진행시 수급사업자가 해외의 법인 설립 또는 해당 국가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가?
 - > 외국 현지 법령상 해외법인 설립이나 해당 국가의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탈법행위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장 발주자의 의무사항

I. 발주자의 의무사항 개요

1.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의무규정

- 하도급법상 유일한 발주자의 의무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임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취지

-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II.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법 제14조)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구 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사유
수급사업자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경제적 사정⁹⁷⁾ 또는 사업에 관한 자격 요건⁹⁸⁾을 상실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⁹⁹⁾ ▪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자간의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함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가. 직접지급의 범위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응해야 함
-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기성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성률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 장래의 하도급대금 즉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장래 취득하게 될 하도급대금은 직접지급청구권의 대상이 아님 다만, 채권양도 등은 가능함

나. 원사업자의 의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서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함

97) 파산, 회생절차 또는 지급정지와 같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98) 해당 사업에 관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된다.

99) 예로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달동안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3. 직접지급 중단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가. 원사업자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

-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과실없이 원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경우¹⁰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됨

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지급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함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할 수 있음

가.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의 도달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함

나. 발주자의 공탁

- 발주자는 직접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은 범위반임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이 가능함

- ☑ 발주자의 과실없이 직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수급사업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등의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발주자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 여부 및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공탁한 경우
- ☑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채권 자체를 압류한 경우
-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보다 많은 경우에 직접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공탁한 경우

100)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보증을 하기로 한 경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이행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5. (가)압류 및 전부명령 등과 직접지급간의 관계

가.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원사업자의 채권에 (가)압류 등을 한 경우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급사유 충족시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채권은 그 범위내에서 소멸하므로 (가)압류 등은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발생한 (가)압류 등은 그 효력이 유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응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나.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 산재보험료 등과 직접 지급제도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 체납처분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처분 전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발생한 체납처분은 체납처분이 우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응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 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 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¹⁰¹⁾

6. 범위반시 제재

가. 행정상, 사법상 제재

- 시정조치, 공표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2배내에서 과징금 부과, 상습 법 위반자 조치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나. 공정위 법집행 동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건을 정면으로 다룬 사항은 찾기 어려움¹⁰²⁾

업무상 TIP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

- 회사가 발주자인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무팀으로 문의할 것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 3766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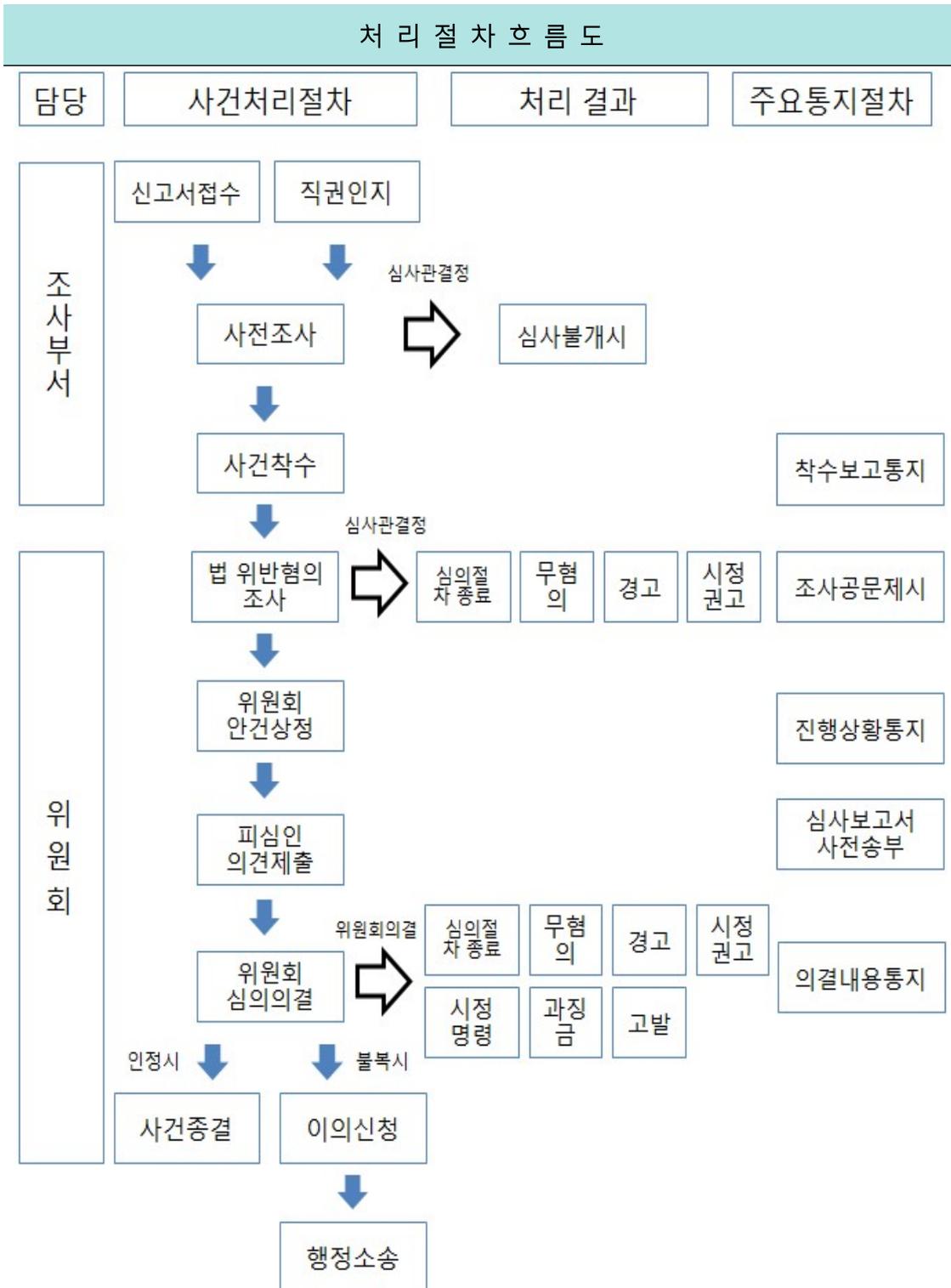
102) 이는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지급요청보다는 바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발주자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는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

록



□ (첨부 1) 하도급 사건 처리 절차



□ (첨부 2) 하도급법 관련 중점 Check 사항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위탁하는 경우

■ 계약체결 전

1. 금지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부터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는 것은 금지됨(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노무비 세부지급 내역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단가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금지됨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추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됨

2. 확인해야 할 사항

- “구매목표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입찰을 유찰시킨 후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입찰서류에 포함할 것(경쟁입찰의 경우 필요시)
- 구매목표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것

■ 계약체결

1. 금지되는 행위

- 계약서 교부 전에 이메일, 구두, 전화 등으로 작업착수를 요청하는 것은 금지됨

2. 확인해야 할 사항

-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 전에 계약서를 교부할 것
-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할 것

[*법정기재사항: (1)위탁일 및 위탁업무 내용, (2)납품,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대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5)사급자재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포함), (6)공급원가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또는 절차, (7)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 법정기재사항 중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으면, 그 곤란한 이유와 확정 예정 시점을 서면에 기재하고, 나머지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할 것
- 해당 내용이 확정되는 즉시 그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계약서를 발급할 것

- 계약 관련 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할 것
(단, 기술자료요구서 등 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간 보존할 것)

■ 계약이행

1. 금지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금지됨
[금지되는 경우 예시: 당사의 경영상 어려움, 보관장소 부족, 판매부진, 사양변경, 고객의 발주취소 등]
- *보복조치는 금지됨
[*보복조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 조정신청, 조사에 협조,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됨
[*경영상 정보: (1)원가에 관한 정보, (2)매출관련 정보, (3)경영전략 관련 정보, (4)영업관련 정보]
- 정당한 사유(검사상 필요 등)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금지됨
-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서면요구서를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금지됨

2.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상 목적물의 검사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것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당사 표준양식의 기술자료요구서를 발급할 것
-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는 당사의 기술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상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술자료를 폐기 또는 반환할 것

■ 대금지급

1. 금지되는 행위

- 당사 내부 사정(계좌 변경 지연, 외화 정기 지불 조건 변경 지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됨
- 당사의 자금사정,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금지됨

-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하더라도, 변경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금지됨

2. 확인해야 할 사항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단,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급원가 변동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당사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개시통지를 할 것

□ (첨부 3) 서식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 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성명		소속		전화 번호	
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 기술자료 내역		요구하는 기술정보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2) 요구 목적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3) 권리 귀속 관계		(i)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ii)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iii)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iv)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4) 대 가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5) 인도일 및 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6) 그 밖의 사항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p>원사업자 ○○○ 와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원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급사업자명 _____ 대표자 _____ (인)</p>	

□ (첨부 4)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가. 기술 검토 용도 (입찰 참여기업) : 나. 계약 이행 용도 (최종 선정기업) : 다. 자재번호, 자재명 및 요구되는 기술자료는 별첨 리스트와 같음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가. 기술 검토 용도 (입찰 참여기업) : 나. 계약 이행 용도 (최종 선정기업) :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사용기간 내 폐기(반환)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3		

* 이 명단은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전송 또는 배포하거나 일부라도 공개하거나 복사하여서는 안됨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 비밀유지계약서 일반조건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일반조건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 3 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 3 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 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급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원사업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6 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제 7 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 9 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첨부 5) 서식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들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별첨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 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 (첨부 6) 서식 「표준 미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 협의 개요 :
 - (협정한 일시/방법)
 -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2020년 12월	초판 발행
2023년 03월	제1 (하도급 부문 전면개정) 발행
2024년 01월	제2 (하도급 부문 일부개정) 발행
2025년 04월	제3 (하도급 부문 일부개정) 발행

편 찬 부 서 HD현대중공업 준법경영실 / 법무팀
담 당 김해성 수석변호사(052-202-3043 / julis87@hd.com)
박은희 책임(052-202-3047 / mokmom@hd.com)
현지혜 사원(052-202-3048 / hyunjh2265@hd.com)

이 책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